

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전원표 의원 등 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9년 11월 28일

○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29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문화예술인의 재능 나눔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충청북도 도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‘재능나눔’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- 도지사의 재능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(안 제4조)
- 재능나눔 사업 (안 제5조)
- 사업비 및 포상 등 행·재정적 지원 (안 제6조~제8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문화예술인의 재능 나눔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충청북도 도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재능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과
 - 안 제6조에서 제8조에서는 사업비 및 포상 등 행·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을 하였음.
- 문화예술에 대한 재능을 나누는 것은 개인의 자발적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재능 나눔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반론이 있을 수도 있으나 문화예술 종사인력이 부족하여 도민이 문화를 충분하게 향유할 수 없는 실정에서는 충청북도가 나서서 재능 나눔 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문화예술인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 따라서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. 끝.